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신탁 약관 (구 하나은행)

제 1 조 (약관의 적용) 근로자우대신탁(이하 "신탁"이라 합니다)거래에는 이 약관과 금전신탁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위탁자 및 수익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근로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한다.

제 3 조 (신탁금액의 제한) 이 신탁은 관법령이 정한 한도내에서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으며 매회적립금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4 조 (신탁기간) 이 신탁의 신탁기간을 3년이상 5년내에서 월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기간연장)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당초 신탁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까지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의해 변경된 신탁기간은 당초 신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 6 조 (신탁이익계산) 이 신탁에 대한 신탁이익계산은 당행 소정의 방법에 따라 연 2 회 매 6 개월 단위로 일정일에 실시하며 이익계산일 익영업일에 원본에 가산합니다.

제 7 조 (특별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위탁자가 퇴직한 경우
4.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5. 위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6.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양도 및 담보 제공)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적립금액 범위내에서 본인명의 대출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으로 인한 계속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세제 혜택) ① 이 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신탁은 3 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으로 인한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징하게 됩니다.

제 10 조 (중복가입 통장의 정리)

삭제(2002.01.01)

제 11 조 (거래중지계좌) ① 은행은 금전신탁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 신탁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후 별도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잔액이 1 만원 미만이며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수탁잔액이 1 만원 이상 5 만원 미만으로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2 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수탁잔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으로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 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②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익계산을 하지 않으며 거래처로부터 지급 등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해당계좌에 대한 신탁이익을 일괄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